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 박상웅·박덕흠·이인선

김민전 • 정연욱 • 김대식

김 건・조지연・강승규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,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국가기술안보원의 설치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(이하 "기술안보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기술안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기술안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.
- ④ 기술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
- 2. 종합계획의 수립의 지원
- 3.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 제정 및 수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심의에 관한 지원
- 5.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등 심의에 관한 지원

- 6.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 • 합병등 등 심의에 관한 지원
- 7.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안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안보원이 아닌 자는 국가기술안보원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⑦ 기술안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안보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- 5.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등 심의에 관한 지원
- 6.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·합병등 등 심의에 관한 지원
- 7.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업무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 의 범위에서 기술안보원에 대 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안보원이 아닌 자는 국가기술안보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.
- ① 기술안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 외에 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안보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

제3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<신 설>

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

② (생략)

<u>다.</u>	
세39조(과태료) ①)

- 1.
 제7조의2제6항을
 위반하여

 국가기술안보원의
 명칭을
 사용한 자
- 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